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966
------------	------

2025년 9월 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성흠제 의원 외 23명

나. 제출일자 : 2025. 8. 11.

다. 회부일자 : 2025. 8. 14.

라. 상정결과

○ 제33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5년9월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성흠제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
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어 공공자전거의 정상적인 대여·반납이 어려워지고, 주차

질서가 훼손되며, 시민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질서 유지에 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 안내·제도 등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개념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함 (안 제2조제7호 및 제11호 신설)
- 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안내판·앱 안내·현장 제도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2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 다. 시민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교육 강화 책무를 명시함 (안 제13조제7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0. ~ 8. 24.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민간 공유모빌리티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거치로 인한 시민 이용불편 및 안전 저해 우려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

1) 보행자전거과-12056(2025.8.25.)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이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 주차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일반 자전거 등 타 이동수단의 무단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시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와 제11호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자전거의 원활한 대여·반납을 위해 필요한 주차공간과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동수단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제7항과 제8항은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무단주차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 공유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내판 설치, 현장

제도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25년 6월말 기준 서울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은 총 2,780개소, 공공자전거는 총 4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대여소별 공공자전거 배치 불균형 발생 등으로 보행불편과 공공자전거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총 440개소에 대해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²⁾” 추진을 통해 따릉이를 재배치함으로써 주차 공간 불균형 및 공공자전거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한 시민에게 이용 마일리지를 '23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타 이동수단의 무단 주차를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판 설치, 앱 안내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2) 보행자전거과-3860호(2024.9.6)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추진계획”

- 대상 대여소 : 총 440개소('25.8월 기준, 총 사업기간 내 3개월마다 재선정)
 - 선정기준 : 전년 동기간 기준 거치대 수 대비 200%이상(과다) 또는 30%이하(과소)
- 참여대상 : 따릉이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25.6월 기준 회원수 495만명)
- 참여방법 : 따릉이앱, 연계 민간업체(티머니Go) 플랫폼에서 직접 참여
- 사업내용 : 출퇴근 시간대(07~09시, 17시~19시) 과다거치 선정 대여소(220개소)에서 대여 시 또는 과소거치 선정 대여소(220개소)에서 반납 시 일정 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100M = 100원 상당) : 1회 100M, 일 최대 400M, 월 최대 5,000M
- 사업실적

구 분	시범사업(티머니Go)		본사업(6월말 기준)
기 간	1차('23.7.~12.)	2차('24.5. ~ 11.)	'25.5.~ 11.(추진중)
실적	총 106,312건 참여 (총 10,632천원 지급)	총 104,833건 참여 (총 10,483천원 지급)	총 110,049건 참여 (총 11,045천원 적립)

※ '25년 본사업 실적은 따릉이 앱 실적만 포함(티머니Go 실적은 11월 사업종료후 포함예정)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 제13조제7항은 시장이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을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는 개인형이동장치, 일반 자전거 등은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유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보·제공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현황

(’25.7월 기준)

구분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개소	329	17	4	4	6	1	14	1	4	8	3	39	2	1	22	4	28	3	18	3	5	49	59	29	5

※ 영등포구 미운영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함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6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성함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승진,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이병도, 이상훈,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민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자전거의 정상적인 대여·반납이 어려워지고, 주차 질서가 훼손되며, 시민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질서 유지에 관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적 조치, 안내·계도 등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신뢰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및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를 신설하여 관련 개념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함. (안 제2조제7호 및 제11호 신설)
- 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적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안내판·앱 안내·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2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 다. 시민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교육 강화 책무를 명시함. (안 제13조제7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을 위하여 지정된 물리적 공간을 말한다.

11.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형 이동수단을 말하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형 이동수단도 포함한다.

제12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간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활동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공공자전거 주차구역</u> ”이란 <u>서울특별시</u> 가 <u>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을 위하여 지정된 물리적 공간을 말한다.</u>
7. ~ 9. (생략) <u><신설></u>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1. “ <u>개인형 이동장치 등</u> ”이란 「 <u>도로교통법</u> 」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형 이동수단을 말하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형 이동수단도 포함한다.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2조의2(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등의 설치·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시장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간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u>

<신 설>

⑦ (생 략)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⑥ (생 략)

<신 설>

무단으로 주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활동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2조(정의)		x	·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비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12조의2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의 설치·운영)	제7항	x	·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무단주차 관련 조치 ¹⁾ 는 소관부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에서 기시행 중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제8항	○	· 안내판 설치를 전제로 비용 발생 ※ 앱을 통한 안내(기시행), 현장계도활동(비용발생하지 않음)
3	제13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	· 자전거 주차질서 확립 및 무단 주차 예방 교육 ²⁾ 은 소관부서 에서 기시행중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대여소) 무단주차 방지 안내판 설치(안 제12조의2)

나. 전제

- 추계기간 공공자전거 대여소 증감은 최근 5개년 평균 증가율(3%³⁾)을 반영하여 추계함
- 안내판은 부착식 안내판 제작·설치를 전제로 함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서울시 공공데이터(공공자전거 대여소 통계)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물가)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89,453천원(연평균 37,89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무단주차 방지 안내판 설치	168,344	5,057	5,174	5,351	5,527	189,453
소계(a)	168,344	5,057	5,174	5,351	5,527	189,453

1) 민간업체(사업체)에 공문을 통한 주차질서 준수 안내(사전조치) 및 앱을 통한 무단주차 신고시 위탁업체 통해 견인(사후조치)

2) 2025년 자전거·PM 안전교육 추진계획 (보행자전거과-1532호, '25. 2. 4.)

3)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최근 5개년 평균 증가율 : 3%

※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현황 (서울시 공공데이터)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공공자전거 대여소(개)	2,467	2,653	2,749	2,763	2,780
연도별 증가율(%)	→7.5	→3.6	→0.5	→0.6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서울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대여소) 무단주차 방지 안내판 설치 비용 : 총 189,453천원

- 산 식 : (현재 대여소 수 x 안내판 제작·설치비) + (연도별 증가 대여소 수 x 안내판 제작·설치비)

= (2,780개 x 58,800원⁴⁾) + {(83+86+88+91+94⁵) x 58,800원}

= 163,464천원 + 25,989천원

= 189,453천원

4) 조달청 종합쇼핑몰 내 주차금지 부착식 안내판 중 납품사례 가장 많은 제품 단가(58,800원) 적용

5) 서울시 공공자전거 연도별 예상 대여소 수 ('26~'30) ※최근 5개년 평균 증가율(3%) 반영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공공자전거 대여소(개)	2,863	2,949	3,037	3,128	3,222
연도별 증가수(개)	83	86	88	91	94